

몽골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단기 방문자 운전
및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과 교환에 관한 협정

몽골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체약당사자" 그리고 공동으로 "체약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21년에 수립된 체약당사자들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기하고,

양국 관계의 핵심축으로서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을 포함한 도로교통 분야에서 상호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각자의 영역 내에서 도로교통을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단기 방문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운전하는 것을 상호 인정하며,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국내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단기 방문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운전하는 체계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2조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의 단기 방문자의 운전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그러한 면허증 소지자가 다음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 몽골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부속서 나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대한민국 내에서, 몽골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몽골 국민은 부속서 가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주는 국제운전면허증에 명시된 범주로 한정된다.

3.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영역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3조

국내운전면허증의 교환

1. 계약당사자들은 국내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국내운전면허증은 이 협정 부속서 다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이고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적법하게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으며 유효한 국내운전면허증(임시 면허증 또는 연습 면허증 소지자는 제외한다)을 소지한 어느 한 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민이 제출한 신청에 기반하여 국내운전면허증의 교환을 허용한다.

3. 국내운전면허증의 교환은 신청자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체검사를 통과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자가 자동차 운전 능력과 관련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실시된다.

4. 이 협정은 계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최초로 발급한 국내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며, 제3국에서 발급된 면허증을 교환하여 취득한 국내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조 제3항은 연령, 건강 상태 또는 정신 상태에 기반한 운전 제한과 관련된 각 계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교환 절차

1. 교환을 실시하는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심사를 목적으로, 다른 쪽 계약 당사자의 신청자는 그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국내운전면허증 원본을, 요청을 받은 계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된 인증된 번역본과 함께 제출한다.

2. 국내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수행하는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1961년 10월 5일 채택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교환을 위한 신청 전 1년 이내에 다른 쪽 계약당사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아포스티유를 포함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 등록 및 행정 절차에 관한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면허증의 확인

1.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국내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및/또는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국내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및/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된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국내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및/또는 진위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4.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몽골 정부의 경우,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경찰청,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대한민국 경찰청

2. 이 협정의 발효에 앞서, 체약당사자들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정식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 그리고

나. 이 협정이 적용되는, 그들의 국제운전면허증 및 국내운전면허증 견본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된 그 국내운전면허증의 인증된 번역본

3. 체약당사자들은 그들의 운전면허증의 변경(예를 들어, 그 견본의 변경),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변경 또는 개정, 그리고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변경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7조

의사소통

이 협정에 따른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의사소통 및 외교 경로를 통한 체약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수행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수반한다.

제8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협의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그러한 이견이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0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체결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하는 서면 통보 중 나중 통보를 접수한 날 후 여섯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어느 한쪽 체결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체결당사자가 그러한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후에 종료된다.

3. 이 협정은 체결당사자들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변경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되는 의정서에 의해 공식화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6년 7월 9일 울란바타르에서 몽골어,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몽골 정부가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자동차 범주

구분	자동차 범주
A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의 경우 실린더 용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전기모터의 경우 정격 출력이 4kW를 초과하고, 설계 최고 속도가 50km/h를 초과하는 모페드를 포함한 2륜 동력 차량), 만 18세 이상
B	운전석을 제외한 승차 정원이 8인 이하이고,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인 자동차(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의 결합을 포함한다), 만 18세 이상
C1	허용 최대 중량이 7,500kg 이하인 C종 자동차(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의 결합을 포함한다), 만 18세 이상
C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모든 자동차(D종은 제외한다)로,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와의 결합이 허용됨, 만 18세 이상
D1	운전석을 제외한 최대 승객 승차 정원이 16인 이하인 D종의 자동차로,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의 결합이 허용됨, 만 21세 이상
D	운전석을 제외하고 8석을 초과하는 승객 운송용 자동차로,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와의 결합이 허용됨, 만 21세 이상
BE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와 결합된 B종의 자동차, 만 18세 이상
C1E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와 결합된 C1종의 자동차, 만 18세 이상
CE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와 결합된 C종의 자동차, 만 18세 이상
D1E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와 결합된 D1종의 자동차, 만 18세 이상
DE	버스 및 트롤리버스를 포함한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와 결합된 D종의 자동차, 만 18세 이상

부속서 나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자동차 범주

구분	자동차 범주
A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 중량 400kg(900 lbs.)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B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7,700 lbs.)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차(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음
C	허용최대중량이 3,500kg(7,700 lbs.)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차(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음
D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용차. 1개의 소형 피견인차(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음
E	상기 B종, C종 또는 D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견인차(트레일러)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부속서 다
대응표

1. 몽골 운전면허증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의 상호 교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몽골 운전면허증	
제1종	대형면허	B종, C1종, D1종	
	보통면허		
	특수면허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제2종	보통면허		

2.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몽골 운전면허증으로의 상호 교환

몽골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B종	제2종 보통면허
C1종	
C종	
D1종	
D종	
BE종	
C1E종	
CE종	

D1E종	
DE종	